

# 창작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제도와 환경을 마련해야

인문대학 언어학과 명예교수 이 정 민

## 1. 우리 저작권을 키우려는 자각부터

학문, 문학, 예술, 대중문화, 기술, 지역 특산품 등 모든 분야의 창작을 북돋기 위해 창작자의 권리를 특별히 보호하고자 영국을 비롯한 세계 각 나라는 18세기 이후 저작권법과 관련법을 만들어 시행해 오고 있다. 우리나라도 저작권법이 1957년 일본법의 영향 아래 제정되고 또 미국의 영향 아래 몇 차례 개정돼 왔다. 그러나 이번 한미 자유무역협약(FTA) 협상에서도 보듯이 다분히 방어적인 자세로만 받아들이다 보니, '저작권' 하면 물어주어야 할 외국의 저작권만 생각하고 이를 경시하고 저항하는 풍조가 만연돼 저작권파(copyleftist) 천하의 인상을 주고 있다. EU와의 협상에서도 마찬가지다. 여하간 우리나라의 또 하나의 새 개정저작권법은 작년 7월부터 시행되었으나, 저작자에게 유리한 조항들은 별로 반영되지 않았다.

우리나라의 저작권법은 본래의 취지에 따라 우리나라 저작자들의 저작권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그리 하면서 영리적인 저작권 이용자(판매자)와 개별적인 사용자(저작물 소비자) 및 사용 중개자(도서관, 대여점, 영화관, 노래방 등)들의 공정한 이용이 가능하도록 서로 이해관계를 최대한 절충케 하여 법과 제도에 반영토록 하고, 창작을 북돋아주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고 침해에 대해서는 투명성 있게 입증하고 징벌적 배상으로 재발 방지 효과가 나타나게 법과 제도를 시급히 정비토록 해야 한다. 저작권의 투명한 운용은 미국이 요구하기 이전에 국내 저작자들의 생존을 위한 처절한 요구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리 해야 학술과 문화 각 분야의 저작자들이 의기저상치 않고 좋은 창작을 계속할 의욕을 갖게 된다. 일방적인 대미, 대외 방어 태세에서 서서히 벗어나 우리의 모든 창작 영역에서 한류를 타고 해외로 뻗치면서 점차 우리의 저작권과 그 밖의 지적재산권을 중국 등 아시아, 중동, 유럽, 북미, 남미 및 아프리카 지역과 같은 밖에서도 거둬들이는 다변적인 대외 공세적 자세를 취할 수 있게 돼야 한다.

## 2. 각 분야의 창작을 북돋는 제도·환경의 마련이 시급하다

학문, 기술 및 예술의 모든 분야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발휘하고 있는 창조자들을 우리 사회가 다 같이 밀어주는 한편, 연구·창작 윤리의 제도 확립으로 공정한 경쟁의 심각한 걸림돌이 되는

표절과 자료 위조·변조의 부정을 엄단해야 한다. 규범을 지키는 경쟁에서 이겨 지적·예술적 혁신에 기여할 수 있게 창의적인 저작에 대해 저작권부터 확보되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 물론 미래의 저작자를 위한 교육, 인재 발굴, 신참 저작인들의 어려움에 대한 정책적인 배려와 지원 및 우수 저작인에 대한 포상제도가 있겠지만, 정책 당국은 수월성에 입각한 지원의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예컨대 문예 진흥 기금의 대부분이 특정 이념 작가 단체 계열로 넘어간다는 편파성 비판(김동형 '봄의 찬가' 에필로그), 우수 저작물 지원 명목으로 실질적으로는 출판 등 이용자 측 지원을 한다는 등의 비판을 듣지 않게 해야 한다). 선별적인 과감한 연구 투자로 노벨 생리-의학상, 물리학상을 타게 해야 한다. 좋은 이야기와 시가 샘 솟 듯이 나오고 국제화도 되고 해서 자연스럽게 노벨문학상도 굴러 들어오게 해야 할 것이다.

영화 분야의 경우, 우리나라 감독들이 국제적으로도 명망을 쌓아가고 있는 가운데 영화 예술의 저작권이 우선 주로 감독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 저작권법에 감독의 저작권을 명시하지 못하고 마치 그 지위가 '실연자' 중의 하나인 것으로 크게 잘못 돼 있다. 이웃 일본의 구로사와 감독은 1950년에 이미 '라쇼몬'으로 베네치아 영화제에서 그랑프리를 수상하고 30년 뒤에도 칸느 영화제 그랑프리를 타면서 20세기 최고의 감독 중의 하나로 꼽힐 정도로 세계적인 추앙을 받고 있고 사후 그의 기념관을 11년 계획으로 짓고 있다. 또한 일본에서는 TV에 영화 몇 장면만 방영되어도 감독이 동일성 유지권에 의거해 저작권료를 받고 있음에도, 우리의 감독들은 전혀 못 받고 있을 뿐 아니라 극장용 외의 방송권, 공연권, DVD권, 재방권, 해외 수출 이익 등 모든 권리를 속칭 '노비문서'로 제작사에게 넘기도록 강요받는 처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요새는 또 그 위에 투자자들의 세력이 과다하여 더더욱 실질적 저작권자인 감독이 설 자리가 없게 돼 있어 한국 영화의 앞날이 어두워지고 있다. 정부는 당초 한국 문예 학술저작권협회에 주었던 영화 등 영상저작물의 신탁 업무를 쪼개 저작자들과 무관하게 공연권을 영상산업협회에, 전송권을 영화제작자협회에 주어 물의를 빚고 있다(저심위 심의 참조). 이러한 난맥을 이루는 제도가 시급히 시정·개선되어 우리에게도 세계적인 존경을 받는 위대한 감독들이 등장하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미술도 재판매시장이 급격히 커가고 있다. 이 때 미술 작가들의 이익과 저작권이 확보되도록 도와야 한다. 한-EU FTA에서 불거진 EU 측의 '추급권' 도입 요구도 미술품의 이용으로 이익을 보는 화랑·경매사 측의 주장만 듣지 말고 재판매 때 화가에게 이익의 일정액을 지급하는 추급권을 인정해 위작시비 등 부작용을 차단하라는 수십 명의 원로 및 일선 화가들의 소리도 심각하게 들어야 한다. 만화, 사진, 기타 미술 관련 분야 작가들의 저작권이 무참히 침해되고 있다. 합부로 방송, 인터넷, 출판물에 이용되고 사적으로 사용되어 저작권이 작가에게 실패 파악이 안 될 정도로 광범하게 침해되고 있다. 카페나 레스토랑 영업장에서 음악을 틀 때 저작권료를 내게 하는 '공연보상청구권'은 EU 주장에 앞서 음악저작권협회가 주장해 오던 것이니, 어떤 합의점을 찾도록 해야 할 것이다.

언론도 저작권법 50년의 역사를 가진 한국에서 우리가 도입하지 않은 영역의 저작권을 항시 '생소'하다는 표현으로 외면하려는 태도를 버리고 진지하게 창작을 고취하는 방향을 잡아주어야 성숙한 언론이 된다. 이제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소속 미술가, 사진작가, 만화가, 영화감독들의 단체회원들은 좀 더 협회와 긴밀히 협조하여 저작권을 챙겨야 할 것이다. 교과서 보상금 신탁 관리 업무도 지난 6년간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가 맡아 오차 없이 저작자들에게 분배해 왔으나 최근 저작권과가 그 권한을 빼앗아 권리나 자격도 없는 그러나 자기 과의 영향하에 있는 복사전송권 협회를 자의적으로 지정해 넘겨버리는 횡포를 저질렀다.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도 각 장르의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새 법으로 커진 '저작권위원회'도 일반에게서 기부금까지 받는 부당한 괴력의 규정까지 만들었다. 온 국민에게 저작권의 중요성을 알리고 존중하면서 이용자와 소비자가 어찌하면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쉽게 정당히 접근할 수 있는지 알려 이용-소비도 과도히 위축되지 않게 돕고, 심의-조정 시 침해에는 엄격히 대처하고 조정 실패 시 독일처럼 바로 재판으로 넘어가게 해 좋은 판례가 서게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미국처럼 그런 기구 없이 바로 법에 호소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나올 것이다.

원래 초기 개정 공청회에서는 법정에 가기 전에 위협적이지 않은 사랑방 같은 데서 오순도순 상의해 풀자는 김동현 시인-변호사의 제의가 채택된 것이나, 조정은 관권하에 이용자 측에 쏠리는 위원들이 주로 앉아 시간만 끌고 무성의한 침해사의 무책임 주장으로 돈만 떼고 조정불성립이 되고 말아 저작권자들에게는 없느니만 못한 기관이 됐다. 판례에는 이용회사인 출판사나 방송사가 침해 작품을 출판, 방영했을 때 몰랐으면 책임이 없다는 수준의 것들이 있다. 결과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 선진국들의 판례다. 한편 음악, 문예-예술-학술, 방송극 집중 관리 단체들이 외국 협회들과 협약을 활발히 맺어 국제저작권을 길러나가야 한다.

### 3. 창작인(homo creatura)을 기르는 교육에 정성을 모으고 집중 투자해야

우리는 무엇인가를 새롭게 표상하고 만들어 낼 때 행복을 느낀다. 교육은 어려서부터 이런 행복을 느끼게 해주는 데 초점을 맞추어 유아, 유치원, 초등, 중·고등, 대학(원) 교육과정을 밟게 해주어야 한다. 생일 카드에 뭐라고 써야 또는 그려 넣어야 친구가 좋아할지 생각해서 쓸 줄 아는 유치원생, 때로 다소 엉뚱하지만 말이 되는 질문을 종종 던질 줄 아는 아이로 길러야 한다. 퍼다가 가위질, 풀질해 내놓기만 하면 내용도 보지 않고 해 냈다고 점수 주는 교육은 그만 두어야 한다. 그런 아이는 선진국에 유학을 가서도 같은 짓을 하다가 표절로 퇴학당하기 쉽다. 가르치는 사람은 쓴 학생, 만든 학생의 마음을 읽기 위해 제출한 창작물을 세심히 읽고 평가해 돌려주어야 한다. 그것이 안 되어 침삭지도를 학원에 맡기는 공교육이라면 그것은 교육이 아니다. 차라리 대

안으로 대안 학교를 고려해야 한다. 창작인으로 기르기 위해서 수준에 맞추어 숙제도 단계 단계 사유체계를 따라 생각하게 하는 창의적인 숙제를 내주어야 한다. 책 제목 같은 병병한 제목의 숙제를 내면 인터넷을 뒤져 기존 정보를 옮겨 오기 쉽다.

우리는 얼마 전 영화를 유난히 좋아하는 민사고 여학생의 이야기에 접했다. 교사도 이 학생에 대한 배려로 영화에 관한 귀한 자료들을 도서관에 구입해 이 학생이 이를 이용할 수 있게 해주었다. 미국에서의 극본 모집에 응해 우수하게 뽑히기도 하고 영화감독을 꿈꾸며 공부하고자 예일대에 입학했다. 공간지각 능력도 뛰어나 영화 만들기에 적성이라 한다. 교육은 이런 창작인への 꿈을 찾아내 기르고 창의성을 뒷받침해주는 것이라야 한다. 창작과 전문성에 대해 늘 자부심을 갖도록 교육과정과 사회가 배려해 준다면 가짜 학력·학위 소란도 안 일어날 것이다.

특히 혁신(innovation)이라 할 지식의 창의적 생산과 예술의 창작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삼는 대학(원) 경쟁력은 국가경쟁력의 기본 요소가 되므로 대학에 대해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집중적인 투자를 해주어야 한다. 우동 할머니의 전 재산 기증 뿐 아니라 제도적으로 기업과 전 사회인의 사회적 환원의 일차적 목표가 되도록 동참해야 한다.

#### 4. 총체적 한류 진작과 선진화를 위해

특히 현대는 저작권을 포함한 지적재산권이 모든 선진국들의 가장 중요한 재산이 되는 시대이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자동차 등의 제조업에서 다소 부진해도 엄청난 지재권을 한국 등 외국에서 받아 자국의 대학(원)을 길러 학술, 기술 및 예술의 우위를 지속한다는 전략을 수행한다. 우리나라도 학문과 문화 창작 내용물을 키워 지적 재산 창조에 혁신적 기여를 해야만 선진국 반열에 오를 수 있다. 나아가 세계를 이끄는 나라가 될 수 있다고 본다. 1976년부터 선진 산업 민주국가 G7이 형성되고 1994년부터 러시아가 들어가 1997년부터 G8이 되고, 이제 경제대국 중국, 인도, 브라질과 멕시코, 남아공이 G13에 들어갈 태세이나, 중-일에 낀 우리나라의 이름은 없다. 나라의 전략은 무엇인가? IMD 평가에서 국가경쟁력 순위가 31위로 떨어졌다. 기획·디자인을 잘 하고 모든 과정을 효율화하고, 놀기만 하는 인구를 줄이고, 대학교육을 혁신적으로 내실화해야 한다.

한 가지 길은 연속 방송극, 영화, 대중음악, 온라인 게임, 비보이 등이 주도한 한류를 차원을 높여 기술(특히 건수 미-일 이어 3위로 오름), 학문, 순수예술 등 모든 분야에서 총체적 해결의 신명나는 한류가 전 세계로 뻗치도록 노력하는 일이다. 저작권 보호가 사후 70년까지로 늘어날 60번째 이후의 나라가 우리나라다. 작년 7월 개정법에서 쏙 빠져 그나마 한미 FTA 체결 이후로 나 바라보게 되었다. 보호기간 연장 논의에 불평만 보도되고 저작자들의 진작 있었어야 할 요구는 없었다. 세계인들이 한자, 아랍문자, 일본문자 등은 쉽게 알아보아도 그 독창적이라는 '한글'

은 알아보지 못한다. 총체적 한류가 뻗어나가도록 총력을 기울이되 실속, 즉 저작권, 지재권을 챙겨 사후 70년, 아니 700년, 7000년 보장 받는 문화 자산으로 삼아야 한다. 우리에게는 지난 5000년의 문화유산과 ‘빨리빨리’ 경제를 일으키는 능력과 세계 최고 수준의 IQ도 있다(『저작권 문화』 2007년 9월호 게재. 글을 다소 새롭게 함).

## 교수의 정년퇴임 연령 65세는 자율화 되어야 한다

농업생명과학대학 농생명공학부 명예교수 한 인 규

우리나라 교육공무원법의 규정에 따라 국립대학교 교수들은 65세의 나이에 이르면 무조건 정년퇴임을 하여야 한다. 우리나라 재정이 빈곤하고 국민들의 평균 수명이 70세에도 이르지 못하던 1960년대에 제정된 이 정년퇴임 연령규정은 이제 재검토 되어야 한다는 것을 먼저 지적하고 싶다. 우리 교수 사회에서는 나이가 65세에 이르렀으나 아직도 건강한 체력을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학문적 명성에 걸맞는 3년 이상의 대형 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으며 여전히 대학 원생도 여러 명 확보하고 있는 교수들도 있다. 그러나 일단 정년을 하게 되면 그는 대학 교수실과 강단을 떠나야 하는 것이 우리나라 국립대학의 현실이다.

20여 년 전에 미국 코넬 대학교의 Rhodes 제9대 총장이 우리 서울대학교를 방문한 일이 있다. 그때 그분의 주된 방한 목적은 개교 125주년을 맞이하여 한국에 있는 코넬 대학교 졸업생을 상대로 발전기금을 조성하기 위해서였다.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미국의 대학들은 그 지명도가 높은 대학일수록 단과대학의 학장이나 그 대학교의 총장이 될 사람은 fund raising 능력이 높은 사람이라야 한다. 그런 탓에 그 Rhodes 총장께서는 우리나라와 중국에 거주하고 있는 졸업생을 상대로 발전기금을 모으러 다니던 중이었다. 그 분에게 그때 우리 대학교의 총장이셨던 조완규 명예교수님께서 귀 대학에도 교수의 정년퇴임 연령 규정이 있느냐고 물었다. 그랬더니 그분의 대답은 이러하였다. 어느 교수이든 정년을 어떤 연령에 해야 된다는 제한 조건은 없다는 것이다. 왜 그러냐 하면 수십 년 전에 이런 규정이 직장생활에 있어서 성과 나이에 따른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미국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 후 정년퇴임 시기는 오직 교수 자신만이 정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헌법도 국민의 취업권은 나이나 성(性)에 따른 제한을 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고 하니 지금의 교육공무원법에 의한 정년퇴임 연령에 관한 제한 규정은 위헌의 소지가 높다고 봐야 할 것이다. 지금 대학들은 입시제도나 대학운영에 있어서 정부의 규제로부터 벗어나 자율성을